울산우편집중국 공고 제2026-12호

# 2026년도 제2회 울산우편집중국 공무직 우정실무원 채용 공고

울산우편집중국에서 우편물 소통 관련 업무를 담당할 우정실무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5. 27.

울산우편집중국장

## 1. 채용 직종 및 인원

| 채용직종 | 인원 | 근무형태 (근무시간) | 근무기관 | 담당업무 |
|---|---|---|---|---|
| 공무직 우정실무원 | 일반 2명 | 17:00~21:00 (4시간제) | 울산우편중국 물류총괄과 | o 우편물 상·하차 작업 및 전동파렛트럭 운전<br>o 우편물 구분 및 적재 작업<br>o 운송용기 정리 및 기타 우편물 소통관련 부대업무 |
| | 일반 3명 | 03:00~07:00 (4시간제) | | |

## 2. 근무 조건

가. 신분: 공무직 근로자 (비공무원)

※ **최초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운영**하며, 동 기간 중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습기간 만료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
※ 기간제 근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 면제

나. 보 수: 기본급 + 수당

o 기본급: 시급 10,320원

o 기본수당: 직무수당, 정액급식비, 명절보로금(1년 이상 근무 시), 주휴수당, 가족수당, 근속수당(1년 이상 근무 시) 등

o 실적수당: 연장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

o 기타: 4대보험(산재보험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국민연금) 가입, 맞춤형복지제도, 퇴직금 지급(1년 이상 근무 시) 등

다. 근무시간

ㅇ 주 5일 근무: 석근 월~금, 1일 4시간 근무(17:00~21:00)
야근 화~토, 1일 4시간 근무(03:00~07:00)

ㅇ 휴게시간: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

※ 초과근무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지급

※ 근무시간 및 복무관리에 대하여 계약 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함

※ 해당 우체국장이 업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근로근무 및 휴일근로근무를 할 수 있음

라. 휴가: 연차유급휴가, 공무유급휴가, 특별유급휴가 등

마. 업무특성

ㅇ 대국민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만족 마인드 필요

ㅇ **20kg 상당(최고30kg)**의 소포우편물을 적재, 구분하기 위한 체력과 업무처리를 위한 정보화 능력 필요

## 3. 응시 자격

가. 응시연령 : 최종시험일 현재 **18세 이상, 60세 미만인 자**

「**우정사업본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**」 제62조(근무상한 연령)
-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상한 연령은 60세로 한다.
- 근로자는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다.

나. 공고일 현재 **대한민국 국적자**(복수국적자 및 외국인은 제외)이고 주민등록상 **부산·울산·경남지역 거주자**(단, 출·퇴근이 가능한 자)

다. 응시자격 제한

ㅇ 우정사업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최종시험일 현재 우편관계법령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

ㅇ 결격사유(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응시 불가)

**[국가공무원법 제33조(결격사유)]**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
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나.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
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
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※ 위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함

## 4. 시험 방법

| 시험단계 / 채용분야 | 제1차 시험 | 제2차 시험 |
|---|---|---|
| 공무직 우정실무원 | 서류전형 | 면접시험 |

### 가. 제1차 시험: 서류전형

○ 응시자의 자격요건, 서류구비 여부 및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

나. 제2차 시험: 면접시험

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,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※ 평가요소

| | |
|---|---|
|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정신자세 |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|
|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| ④ 예의 · 품행 및 성실성 |
| ⑤ 창의력 ·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| |

## 5. 응시서류 접수

가. 모집공고: 2026. 5. 27.(수) ~ 6. 4.(목)

나. 응시원서 접수기간: 2026. 5. 27.(수) ~ 6. 4.(목) 18:00까지

다. 원서교부: 공고문과 함께 게시된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

라. 접수방법: **고용24홈페이지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접수**

※ 온라인 접수방법은 고용24 콜센터(1577-7114) 문의

※ 최종 접수 여부는 마이페이지 - 입사지원 관리 - 알선/입사지원 내역에서 반드시 확인.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

마. 구비서류 첨부: 온라인 접수시 PDF · JPG 파일(응시분야_성명_서류명) 첨부 또는 등기우편,전자우편 제출(온라인 첨부가 어려울 경우)

※ 등기우편 제출

- 접수처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유통로 34, 울산우편집중국 지원기술과 인사담당앞 구비서류 재중 우편번호: 44248

- 우편 제출은 마감일 소인분(익일특급)까지 유효함

※ 전자우편 제출: tax60008240@korea.kr

※ 구비서류를 등기우편,전자우편으로 제출하더라도 **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함**

## 6.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

가.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6. 8.(월)

나. 면접시험: 2026. 6. 10.(수)

다. 최종합격자 발표: 2026. 6. 11.(목) 14시 이후

라. 서류전형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울산우편집중국 홈페이지 게시

마. 면접시험의 장소 및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

※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(운전면허증)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**30분 전**까지 지정한 장소에 입실 완료하여야 함

**※ 면접시험에서 응시자의 채용기준 미달 시 선발 예정인원보다 채용인원을 축소하여 선발할 수 있음**

**※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면접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**

## 7. 제출서류

가. **응시원서** 1부【붙임1】

나. **이력서** 1부【붙임2】*본인의 정확한 주소 기재하여야 함

ㅇ 최종합격자에 한해 주민등록초본으로 주소를 확인하며,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

다. **자기소개서** 1부【붙임3】

라. 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** 1부【붙임4】

마. **범죄경력 부존재 확인서** 1부【붙임5】

바. **주민등록초본** 1부(최종합격자에 한함)

※ 각 서류는 공고일(2026. 5. 27.)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하며, 누락(미비사항)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됩니다.

※ 기본 인쇄 출력할 것, '모아찍기(양면인쇄)' 접수불가

## 8. 기타사항

가.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시험일 3일 전까지 울산우편집중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.

나.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, 최종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, 등기사항부존재확인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격(결격사유)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.

다.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ㅇ 최종합격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울산우편집중국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ㅇ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(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)를 작성하여 울산우편집중국 방문신청, 팩스(0505-005-1619) 또는 이메일(tax60008240@korea.kr),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

ㅇ 울산우편집중국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
라. **공무직 우정실무원은 비공무원이며, 공무직으로 채용되어 정년은 60세까지로 하며, 최초 3개월간은 수습기간으로 운영됩니다. 수습기간 중의 보수는 동일하게 지급되나,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**

마. 우정실무원 근무경력은 향후 우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됩니다.

바. 접수마감 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거나(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) 같을 경우는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거나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
ㅇ 재공고했음에도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, 현재까지 응시인원을 대상으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사.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를 기재하시기 바라며,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응시자의 책임임을 미리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

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산우편집중국 지원과(052-283-600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